

평가시행 중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 계획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1. 기본원칙

- 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 나.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다.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할 경우 과제물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
 - ※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한 토의·토론, 화상 발표 등(유형Ⅰ),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유형Ⅱ)으로 평가 가능(유형Ⅱ: 2021년 모든 교과에 허용)
 - ※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할 경우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생의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 가능
- 라. 평가(지필 및 수행평가)의 방법 및 반영비율, 횟수 등은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도교육청 지침¹⁾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 마. 출결 인정 방법과 인정점 부여 방법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인정점은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별도의 운영계획 등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 바.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의거하여 등교중지된 학생의 출결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2. 수행평가

- 가. 수행평가 시기·분량·정도 등 학생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집중 또는 분산)에 안정적으로 운영
 - 나. 학생 간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모둠형 수행평가, 비밀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모둠형 수행평가 등)는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방역 강화 등 조치 후 실시
 - 다. 코로나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 방안은 '4. 결시자 성적처리'의 출결처리를 참고하여 교과별 평가계획서의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르며, 평가 시행 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
- ※ 공정한 수행평가를 적정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 사전 확보 노력 요망

3. 지필평가

- 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년(급)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을 자제함.
- 나. 지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완화

• 지필평가 1회 실시 가능 수행평가 최소 반영 비율을 70%에서 **40%**로 감축함.(시행지침)

1) (과목별 수행평가 반영 비율) 20%이상, (지필평가 1회만 실시할 수 있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 60% 이상

1쪽 '방침6'관련) → 학교는 지필평가 1회에 따른 결시자 인정점 문제 등 충분한 고려 필요, 코로나19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평가 기회(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 참고.

- 고사실 2인 감독 배치 학급당 기준 인원(18명)을 학교 자율 결정 사항으로 함. 즉 학생 수가 18명 이상이지만 1인 감독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1인 감독 배치 가능 → 시험 감독 보조는 학부모로 한정됨. 대학생 봉사활동 등 금지는 유지됨.(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8쪽 '4' 관련)
 - 정답이 없거나 모두 정답인 경우 등 재시험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가 재시험 시행 여부를 판단함. → 학교는 재시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보안관리를 포함하여 지필평가 출제,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시행지침 '별지15' 관련).
- ※ 시행지침 완화는 학교가 지필평가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임. 지필평가는 학교장 시행 시험으로 학교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및 신뢰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함.

다. 지필평가(정기고사) 시행 중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는 비상상황 발생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험 연기 및 일정 조정

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²⁾

(1) 발열검사 또는 시험 시행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

(2)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대상별 조치 방법

(가) 교직원: 바로 귀가 조치

(나) 학생: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생 상태를 설명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받도록 안내

※ 보호자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4. 결시자 성적처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 ① (일부 학생 미응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 ② (학급 단위 미응시) 시험 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일부 학생 미응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도교육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 ③ (학년(교) 단위 미응시) 시험 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도교육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 마련

2)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세부 행동 방안은 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계획에 따름.

나.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인정비율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¹ , 격리 통지 ²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100%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고] 1) ① 격리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② 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2) ① 코로나19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② 코로나19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③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④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 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	100%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고]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100%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 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 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감염예방 관리안내 5쪽]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 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 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함.

다.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	100%

		장 판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 장 판단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 장 판단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 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라.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의사 소견서 등 (병명과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전북도교육청 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 위에서 논하지 않은 사안 발생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